

대법원 2024도11594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 훼손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, '피해자가 A를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B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·입수하고, 이를 토대로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하였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,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¹⁾ 위반(명예훼손)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서경환)는,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4도11594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사건의 개관

- 피고인 ⇒ 변호사[정당 前 최고위원 및 법무부 인권국장 역임]
- 피해자 ⇒ 당시 검사[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역임]
- A는 2019. 12.경부터 '피해자가 2019. 11. ~ 12.경 B 재단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는 등 자신을 표적수사하였다'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으나, 2021. 1. 22. 사과문을 게시함²⁾

1) 이하 '정보통신망법'

2) A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024. 6. 17. 유죄판결이 확정됨[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4도841 판결]

- ▣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하였던 이른바 'C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'에 관하여는, 2022. 4. 6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

나. 공소사실의 요지[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]

- ▣ 피고인은 2021. 11. 22.경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른바 '고발사주 의혹, 검언유착' 등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'피해자가 A를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B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·입수하고, 이를 토대로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하였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함
- ▣ 그러나 사실 ① 피해자가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직접 또는 각급 검찰청에 지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B 재단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받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계좌 거래 내역을 열람·입수한 사실이 없었고, ② 피해자가 계좌추적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한 사실도 없었음
- ▣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

다. 적용법조

[정보통신망법]

제70조(벌칙)

-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소송경과

- ▣ 제1심 ➡ 유죄
 - 벌금 500만 원
- ▣ 원심 ➡ 피고인 항소기각

- 피고인의 발언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됨
- 피고인의 발언은 '피해자가 A를 표적수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, 피해자가 B 재단 명의 계좌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하였다'는 취지로 해석됨
-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,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
-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, '비방할 목적'이 인정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에 관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